법규명: 화장품 공급원 및 흐름정보 관리방법

발표일자: 2019년 05월 22일

**제1조**

본 방법은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(이하 본 법)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되었다.

**제2조**

화장품 제조 혹은 수입업자의 경우 본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직접 공급원 및 흐름정보의 범위, 항목,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제조 혹은 수입정보 및 증빙

(1) 제품명, 제품등록번호 혹은 허가증번호, 포장규격, 순중량 혹은 용량

(2) 로트번호

(3) 수량

(4) 수입 통관일자 및 수입신고번호

2. 흐름정보 및 증빙

(1) 공급대상의 명칭, 주소, 담당자 이름, 연락처

(2) 제품명, 제품등록번호 혹은 허가증번호, 포장규격, 순중량 혹은 용량

(3) 로트번호

(4) 수량

(5) 인도일자

**제3조**

화장품 판매업자의 경우 본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공급원 및 흐름정보의 범위, 항목,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공급원 정보 및 증빙

(1) 공급자 명칭, 주소, 담당자 이름, 연락처

(2) 제품명, 제품등록번호 혹은 허가증번호, 포장규격, 순중량 혹은 용량

(3) 로트번호

(4) 수량

(5) 수령일자

2. 흐름정보 및 증빙

(1) 공급대상의 명칭, 주소, 담당자 이름, 연락처

(2) 제품명, 제품등록번호 혹은 허가증번호, 포장규격, 순중량 혹은 용량

(3) 로트번호

(4) 수량

(5) 인도일자

**제4조**

화장품 업체는 상기 두 조항의 정보를 상세히 기록, 서면 혹은 전자파일로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. 보관기간은 제조, 수입, 공급일 다음 날로부터 최소 5년이다.

**제5조**

본 방법은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된다.